

수익자총회 소집 통지서

1. 수익자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0조에 의하여 ‘[교보 머크셔 사모 주식투자신탁 1호](#)’의 수익자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0년 3월 2일 (화) 오전 11시

나.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22층 교보약사자산운용(주) 대회의실
(Tel : 02-767-9600)

다. 수익자총회 개최 목적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수탁회사의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탁회사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한국씨티은행

2010년 2월 10일

교보약사자산운용회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첵슈리아오** (직인생략)

[별첨] 투자신탁 약관 변경 안내

변경전	변경후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약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을 수탁회사로 한다.	제2조(투자신탁의 종류,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 이 투자신탁은 주식형투자신탁으로서 교보약사자산운용주식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한국씨티은행 을 수탁회사로 한다.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1.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란 대부분의 수익자께서 물리적,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수익자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 등으로 수익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71조에 의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님께서는 굳이 수익자 총회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수익자님의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제도』를 활용하시어 수익자님의 의견이 펀드의 운용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

- 1) 보내드린 수익자총회 통지서의 『수익자총회 부의 안건』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의결권 표시 방법** : 보내드린 의결권 행사양식의 ‘**의사표시**’란에 수익자님의 의사에 따라 “**贊·反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실질수익자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 4) 수익자님께서 의사표시 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를 동봉한 봉투에 담아 동 펀드의 운용회사인 교보약사자산운용(주)로 수익자 총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되어 수익자총회 당일 직접 참석하신 수익자님의 의결권과 합산되어 수익자총회 의안의 투표에 반영됩니다.

서면 의결권 행사 통지서

본인은 2010년 3월 2일 (화)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교보 버크셔 사모 주식투자신탁 1호’의 수익자총회의 의안에 대한 의결권을 다음과 같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수익자명	(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유좌수		
제 1 호 의안	수탁회사의 변경	찬성
		반대

2010 년 2 월 일

수익자총회 소집 관련 수익자 동의서

본인은 ‘[교보 버크셔 사모 주식투자신탁 1호](#)’의 수익자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1. 투자신탁의 명칭 및 보유좌수 현황

판매회사	투자신탁 명칭	잔존좌수(좌)	최초 설정일
하나은행	교보 버크셔 사모 주식투자신탁 1호		2008/04/29

2. 수익자총회 사항

- ① 수익자 확정 기준일자 : 2010.02.24 (수)
- ② 폐쇄기간 : 2010.02.25 (목)
- ③ 총회일시 : 2010.03.02 (화) 오전 11시
- ④ 총회장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22층 교보약사자산운용(주) 대회의실
- ⑤ 수익자총회 목적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수탁회사의 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수탁회사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한국씨티은행

3. 동의 사항

상기 부의 안건 및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① 기준일 설정에 따른 총회소집통지 일정의 법적기간 단축 동의
- ② 총회소집 통지 생략 및 총회 의결사항 통보 생략 동의
- ③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므로 매수청구행사는 하지 않음을 동의

2010 년 2 월 일

수익자 _____ (인)

동 의 서

교보약사자산운용주식회사 귀중

본인은 금번 수익자총회소집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의 일체내용에 대하여 수익자로서 동의하므로 이 동의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펀드명 : 교보 버크셔 사모 주식투자신탁 1호

2. 보유수량 : _____ 좌

3. 총회사항 :

1) 수익자 확정 기준일자 : 2010년 2월 24일 (수)

2) 폐쇄기간 : 2010년 2월 25일 (목)

3) 총회일시 : 2010년 3월 2일 (화) 오전 11시

4) 총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22층 교보약사자산운용(주) 대회의실

5) 부의안건 :

제1호 안건: 수탁회사의 변경

4. 동의사항 : 상기 펀드에 대한 아래사항을 동의함.

1) 기준일 설정에 따른 총회소집통지 일정의 법적기간 단축 동의

2) 총회소집통지 생략 및 총회 의결사항 통보 생략 동의

3) 제 1호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므로 매수청구행사는 하지 않음을 동의

2010년 2월 일

수익자

(인)